

영국판례 1

사용한 단어에 명예훼손적 의미가 있을 경우 그 표현의 정당성을 입증할 어의명세표를 제출해야

Allsop v. Church of England Newspaper Ltd, and Others (1972) 2 Q.B. 161

사건개요 및 판결요지

어느 저명한 TV 방송인 겸 작가가 『이해할 수 있는 종교적인 TV가 필요하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한 영국교회신문사와 그 편집인 및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음란서화와 TV 화면의 폭력, 섹스, 음란성을 비판 하는 글에서 원고에 관하여 「성향 있는 전직」(preoccupation with the bent)이라는 말을 두번 썼다. 소상에서는 위 표현이 내포할 의미의 명세(particulars)를 자세히 기재하지 않고, 위 용어에 관한 통상적인 의미만 주장하였다. 피고들은 위 표현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뜻을 갖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한편, 가사 그렇다고 하여도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공정한 비판이라는 항변을 하였다. 피고들은 준비절차 과정에서 어의명세의 제출명령을 신청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려고 하는 의미 즉, 글자 그대로의 뜻 외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것이다. 위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에 대한 피고의 항고를 인용하면서, 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문제의 표현이 둘 이상의 통상적인 의미를 가지거나 보편적 또는 사전적 정의 외에 별도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그 표현에 내포되었다고 주장하는 모든 의미에 관한 명세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많은 경우 이는 필요한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 피고들이 당면한 사건을 파악하여 방어조치를 취하거나 사과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로 법원도 문제된 표현을 미리 알고 보다 나은 입장에서 그 단어가 그러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처럼 「bent」라는 용어가 부정확한 문맥에서 속어로 사용된 경우에 원고는 그 어의의 명세를 요구 받을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결이유의 요지

Denning 판사의 판결이유

1969 10. 31 자 영국교회신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종교적인 TV 가 필요하다』 라는 제하의 Eddy Strident 가 작성한 기사가 게재되었다. 그 기사는 저명한 방송인이자 작가인 Kenneth Allsop 씨에 대한 것이었다. 그것은 TV · 영화를 다룬 것으로 「이는 allsop 씨의 성향있는 전직을 반영한 것이다」 고 하면서 나아가 「비록 재능이 있다고 해도 Allsop 씨와 같은 인물을 TV 의 것처럼 영향력 있는 자리에 두는 것이 과연 BBC 로서 올바른 처사인지에 대하여 가끔 의문이 생긴다」 라고 하였다. Allsop 이 변호사를 통하여 위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소장에는 위 표현에 관한 진의 설명을 많고 있다. 용어의 자연적이고 통상적인 의미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들은 위 표현이 명예훼손의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는 주장을 부인하면서 또한 위 기사가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공정한 비판이라는 항변도 제출하였다.

피고들은 이에 위 표현에 관한 어의명세의 제출을 구하고 있다. 피고들의 주장요지는 원고가 위 표현에 내포되어 있다면서 소송에서 주장하려고 하는 의미, 즉 용어의 문학 그대로의 뜻 외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려는 것이다. 이러한 피고들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피고들이 불복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에 관한 법률문제는 이미 완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원고측이 이른바 법적인 진의 혹은 진실한 어의를 주장하려고 할 경우 다시 말하면 통상적인 의미 외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진의 설명을 위한 어의명세의 제출의무는 없는 것이다. 법령에 의하면 문서 또는 말에 의한 명예훼손의 소송에서 원고가 어떤 용어 또는 사건이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명예를 훼손할 취지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그는 그 취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원용하는 사실관계와 사건들의 명세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R.S.C.규칙 82, r, 3) 이 사건의 경우처럼 원고가 통상적인 의미만을 문제삼고 있는 경우에는 위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대리인에 의하면 1949 년 이래 원고가 통상의 의미만을 주장하는 사건에는 어느 표현이 갖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의미에 관한 명시를 요구 받은 사건은 없다고 주장한다.

본인은 원고대리인의 견해와는 달리 법률개제가 이미 해결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반대로 대법원은 Lewis v. Daily Telegraph Ltd.(1964 A.C.234) 사건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명백히 유보하였다 두 사람의 대법관은 비록 원고가 통상의 의미만을 주장하려는 경우에도 그 용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의미를 밝히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명백히 결론을 지었다.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과연 의무로 되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였다. Devlin 판사에 의하면 「명예 훼손적인 의미가 그다지 명백하지 않는 모든 사건에서 어의설명서의 제출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대법관 여러분들이 통상적 또는 대중적인 어의를 밝힐 서면의 제출이 허용될 수는 있으나,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결정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본인도 이해한다. 본인 역시 이 사건에서 위 쟁점이 직접적으로 제기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동의하는 바이므로 본인 또한 판단을 유보하고자 한다. 그러나 사건으로는 비록 그와 같은 서면의 제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도, 이는 예로부터 1949년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온 답변형식으로, 새로운 규칙에 의하더라도 그동안 잘 확립된 관행을 바꿀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Hodson 판사에 의하면 「어의에 관한 설명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지 않을 경우 법관은 대상어구의 자연적이고도 통상적인 의미의 한계를 정한 뒤 그 증명예를 침해할 만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의미만을 배심에 회부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위 사건 이후 Slim v. Daily Telegraph Ltd.(1968. 2Q. B.157 158)사건에서 Salmon 판사도 동일한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결국, 용어가 내포한 의미에 관하여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원고가 그 용어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피고가 추측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피고는 잘못 추측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피고는 실제 재판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부분에 대하여 정당성주장 또는 공정비평이라는 항변 등으로 방어를 함으로써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내용을 잘 모르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법정에서 나오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상 열거한 것이 법원과 재야법조의 경험 있는 실무자들의 견해인 바, 이에 대하여 본인은 나 자신의 의견을 첨가하고자 한다. 원고가 어느 말이 명예 훼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에게 이를 실시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첫째로, 피고로 하여금 그가 당면할 사건을 알게 하여 정당성의 주장 또는 공정한 비판이라는 항변을 하거나 혹은 사과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고, 둘째로, 소송이 적절히 지휘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소송 도중 그 단어가 가지고 있다는 의미들을 배심원에게 시사하리라는 데 동의한다. 그러면 판사는 그때 그 말이 과연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함이 합리적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의미들이 미리 정해질 수 있다면 훨씬 낫다. 이는 모든 사람이 그러한 의미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알게 하고 특히 판사가 그 의미들에 관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두사건판결이 위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하나는 Jones v. Skelton([1963]1w.L.R.1362, 1369) 판결로서, 재판 도중에 용어의 의미들이 서면으로 실시 되었음이 명백하다. 다른 하나는 최근 사건인 Drummond-Jackson v. British Medical Association([1970] IW L . R .688) 판결로서 이 사건에서 본인은 원고가 어의설명의 서면제출을 안 한데 대하여 유감을 표한바 있다. 본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용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명예 훼손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다. 우리는 이를 추측할 수 밖에 없다. 본인 생각으로는, 이는 불운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본인은 소수의견 쪽이었다. 그러나 다수 의견쪽 역시 진의 설명의 서면이 없이 판결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Pearson 판사는 용어가 가질 수 있는 명예 훼손적인 의미를 그 스스로 시사하면서 이 사건을 해결하였다. 만일 원고가 서면을 통하여 그 의미를 미리 밝혔더라면 훨씬 더 나았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단어가 지니고 있다는 의미를 진의 설명서면을 통하여 밝히는 것이 단지 바람직한 일일 뿐 아니라 필요적이라는 점은 위 모든 것에 비추어 볼 때 납득이 된다. 적어도 어느 단어가 둘 이상의 통상의 의미를 가진 때에는 원고는 반드시 이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 유일한 예외는 어떤 말이 명확하게 단 하나의 통상적인 의미를 가진 경우뿐이다.

이 사건에서 「어떤 성향을 가진(with the bent) 전직」이라는 말이 문제된다. 사전을 살펴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bent」라는 단어는 과학 또는 문학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 그것은 이 사건에서의 의미가 아니다. 위 단어는 때때로 「구부러진」 막대기에서와 같이 「굽은」, 「구부러진」이라는 의미로 쓰여진다. 이 또한 여기에서의 의미가 아니다. 사전에 나온 또 다른 뜻은 갈대와 같은 기질을 가진 잡초의 이름이다. 이것 역시 들어맞지 않는다. 사전에 있는 의미는 어느 것도 위 문장에 적합하지 않다. 「bent」는 여기에서 속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 말에는 정확한 의미가 없다. 이는 보편적으로 이해될 만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그 단어는 아마 어떤 집단의 사람들 사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 단어는 무엇인가 비상한, 보통으로부터 벗어난, 혹은 줄(열)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는 명예 훼손적인 의미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한편 그 단어는 성적인, 금전적인, 혹은 그보다도 훨씬 못한 의미로 무엇인가 뒤틀리고 타락한 것을 의미할 수 있다. - 이는 명예 훼손적인 의미가 될 것이다. 본인은 배심원들이 위 단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는지 모른다. 그들은 각자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어떤 말은 경우에 따라 매우 명예를 훼손하는 의미로도, 또는 극히 가볍게 훼손하거나 전혀 훼손하지 않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본인은 어느 말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명세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견해를 명백히 갖고 있다. 그것은 피고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들을 공정하게 대하자는 것일 뿐이다. 피고들은 공정한 비판이라는 항변을 하려고 할 수도 있고 사과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 혹은 그 말이 크게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도 피고들은 여전히 더욱 공손히 사과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 여하튼, 피고들은 자신들을 상대로 진행되려고 하는 사건의 내용을 알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본인은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 중의 하나라는 데 동감한다. 그러나, 본인은 이 사건을 포함한 많은 경우,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소송사건에서 원고가 어느 말의 자연스럽고 통상적인 의미에 의거하고 있는 때에는 진의 설명의 서면제출이 의무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의 명세표의 제출을 명하는 것이다.

Karminsky 판사의 판결이유

본인은 위 판결에 동조하며 단지 한 가지 점만을 첨가하고자 한다. 이 사건에서 제기된 만점은 원고에 대한 비평과 관련하여 위 기사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확정 짓는 것이다. Denning 판사는 그 기사가 두 번 Allsop의 「성향 있는 전직」이라고 언급하고 나아가 이 문제를 「화면에서의 폭력과 섹스 그리고 음란성의 취급에 관한 전체적인 문제점은 보다 많은 깊이 있는 연구를 필요로 한다」라는 말로 요약하면서, 이를 덴마크의 음란서화와 같은 다양한 성적 문제와 관련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첫 인상은 그 사용된 말이 성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향 있는 전직」이라는 어구가 분명히 성적문제와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bent」라는 단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본인은 거의 아무런 지식이 없다고 고백할 수 밖에 없다. Denning 판사는 「bent」라는 단어에는 광범위하게 다른 여러 의미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그 단어가 이 사건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은 동성애인지 이성애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변태성욕과 연결될 수 있는 성적인 버릇과 관련되어 있는 것임은 명백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본인은 Denning 판사가 제의한 명령이 확실히 매우 바람직스럽고 또한 사실상 필요적일 수도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본인은 항소가 인용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